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이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2일

발 의 자 : 이순자, 장우윤, 김진철, 전철수,
유광상, 박진형, 김영한, 이종필,
김제리, 유동균, 최판술, 서영진,
김경자(강서)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서울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